

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

소관부서 : 의회사무과

제정 1996·3·1 규칙 제 4호
 개정 1998·11·24 규칙 제140호
 전문개정 1999·3·5 규칙 제159호
 개정 1999·6·23 조례 제292호
 (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)
 개정 2000·3·7 규칙 제190호
 개정 2003·6·14 규칙 제260호
 개정 2008·10·20 조례 제726호
 (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)
 일부개정 2023·5·4 의회규칙 제32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회사무과(이하 “사무과”)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·10·20>

제2조(사무과장) ① 사무과장은 지방사무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08·10·20>

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 <개정 2000·3·7, 2008·10·20>

1.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
2. 문서, 보안,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
4. 의정보도자료 수집,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
5. 청원, 진정서의 접수, 분류 및 처리
6. 의회 청사시설,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
7.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
8.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
9. 각종 의안의 접수, 인쇄, 배부, 이송 등 처리 종합
10. 의회경비 및 방청, 참관,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
11.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

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

12. 각종 회의록 작성, 보관,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
13. 의결문서의 보존, 발간, 이송 등 처리 총괄
14.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

[제목개정 2008·10·20]

제3조(전문위원)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 표 1과 같다.

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조례안, 예산안,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
2.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·조사·연구 및 소속 위원회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
3.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
4.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
5. 위원회 주관 공청회, 세미나, 간담회 등 운영
6. 기타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·11·24 규칙 제140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9·6·23 조례 제292호,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생략

부칙 <2000·3·7 규칙 제190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3·6·14 규칙 제260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·10·20 조례 제726호,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

수 조례>

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「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」 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1조 본문중 “의회사무국(이하 “사무국”이라 한다)”을 “의회사무과(이하 “사무과)”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, 제2조제1항 및 제2조제2항중 “사무국장”을 각각 “사무과장”으로 하고, 제2조제1항중 “지방서기관”을 “지방사무관”으로 한다.

[별표 1] 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전문위원별 직급(제3조 관련)

위원회명	직 위	직 급
의회운영위원회	자치행정전문위원	지방행정사무관
자치행정위원회		
산업건설위원회	산업건설전문위원	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

② 생략

부칙 <2023·5·4 의회규칙 제32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23. 5. 4>

전문위원별 직급(제3조 관련)

위원회명	직 위	직 급
의회운영위원회	자치행정전문위원	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
자치행정위원회		
산업건설위원회	산업건설전문위원	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